

#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

(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)

'21. 6. 29. 제정

## I. 목 적

- 본 지침은 「관세법」 제3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5조에 따라 세관의 개청시간 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세부 처리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## II. 적용 대상

-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FTA관세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제1항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
  - 「관세법」 제232조의2제1항 및 「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(이하 “원산지 고시”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 양허대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
- ※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인이 재발급 신청하거나, 정정 발급 신청하여 발급심사 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

## III. 업무처리 지침

### 1. 임시개청 신청 및 심사 절차

가.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날의 직전 개청일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을 신청

\* (신청방법) 관세청 UNI-PASS → 전자신고 → 신고서 작성 → 공통 → 「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」 작성

- 나. 신청인은 임시개청을 신청한 시간에 맞춰 세관장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
- 다. 세관장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발급 승인 여부 결정(당일 처리 원칙)
- 라. 세관장은 다목에도 불구하고,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이 필요하거나,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원산지 고시 제23조에 따른 현지확인 대상의 경우에는 발급 신청을 받은 날에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마.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제반 절차가 완료되면 전자 통관시스템에 임시개청 결과 등록
  - \* 다만, 신청인이 임시개청 신청한 건이라도 「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증명서 발급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자동심사 처리된 경우에는 임시개청 결과등록 불요
- 바. 신청인은 임시개청 결과가 등록된 건에 대해 수수료 납부

## 2. 임시개청 수수료

- 가. (부과산식) 수출신고와 동일한 임시개청 수수료 적용
  - \* (기본 수수료) 평일 1,000원, 휴일 3,000원
  - (시간당 수수료) 00시 ~ 06:00 : 1,750원, 06시 ~ 18시 : 750원, 18시 ~ 22시 : 1,200원, 22시 ~ 24시 : 1,750원
- 다. (부과기준) 동일 신청인이 다수 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1건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1건으로 인정하여 수수료 부과

## IV. 시행일자

- 이 지침은 2021. 7. 1. 부터 시행함